2013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2013년 1월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준 항목이 추가되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준 항목 추가

【 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추진배경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준 항목 확대

주요내용 ❶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개 추가(17개 → 20개) :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❷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 추가 : 신속·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을 추가

시 행 일 2013년 1월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03~16)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년 9월 27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 강화

○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 마련(2012. 9. 27 제정)

*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론(Nonylphenol)

– DNOP,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

-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

* 전이량 :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빠는 행위), 피부,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

*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추진배경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주요내용 ❶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시 행 일 2013년 9월 27일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2~64)

3.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 시행

○ 이를 통해 기존 수시점검(측정장비 및 비디오 단속)의 비효율성(강제정차로 인한 국민 불편, 사고위험 등) 및 지자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보완

○ 2013년 2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며, 2014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을 확대

- 참고로, 특·광역시 및 시·군·구에서는 기존의 수시점검 방법인 측정장비 단속과 비디오 단속 실시

【 수시점검 개선 주요내용 】

추진배경 측정장비를 이용한 강제정차식 수시점검의 국민 불편·불만, 차량정체 유발, 교통사고 위험 및 지자체의 단속률 저조 문제 개선·보완

주요내용 ❶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으로 원격측정을 추가

- 변경전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 단속 → 변경후 : 원격측정기 추가

시 행 일 2013년 2월 2일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2~33)

4.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

○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 · 점검 및 확인검사

○ 전문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시행

주요내용 ❶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

시 행 일 2013년 2월 2일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2~33)

5.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농민 건강보호 및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가 새롭게 도입

○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는 건설기계에 국한되는 등 미흡하였으나, 농업기계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신설

*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NOx 34%, PM 43%가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농업기계 등)에서 배출(2009년 CAPSS 자료)

【 2013년도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도입 】

추진배경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에 대한 규제제도 도입

주요내용 ❶ 트랙터, 콤바인 Tier-3 기준 적용(원동기 출력별 적용시기 차등)

❷ 업체는 농업기계 제작 · 수입전에 환경인증 의무화(인증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시 행 일 2013년 2월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2~33)

6.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2013년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는 8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직접 수행

– 2013년 한해동안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보제를 확대

【 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전국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주요내용 ❶ 미세먼지 당일 예보

❷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시 행 일 2013년 9월(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

근 거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044-201-6862~72)

7.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

○ 그 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 런던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시행

향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를 지속 확대

【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추진배경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 유도

주요내용 ❶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 및 전량 육상처리 전환

시 행 일 2013년 1월 1일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2~75)